 국토교통부		보 도 자 료	
		배포일시	2018. 6. 29.(금) / 총 3매(본문2)
담당 부서	건축정책과	담 당 자	• 과장 남영우, 사무관 김부병, 주무관 이창욱 • ☎ (044) 201-3765, 4835
보 도 일 시		2018년 7월 2일(월)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※ 통신·방송·인터넷은 7. 1.(일) 11:00 이후 보도 가능	

건축안전센터 설치로 지자체 건축행정 전문성 높인다

건축법 시행령·시행규칙 개정안 시행...여건 고려 공동 설치도 가능

- 지자체별로 건축사, 구조기술사 등 전문 인력을 고용해 지진 화재 등으로부터 건축물이 안전한지 심도 있는 검토를 수행할 수 있게 됐다.
- 국토교통부(장관 김현미)는 지방자치단체 별로 설립할 수 있는 지역건축안전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‘건축법 시행령’ 및 ‘건축법 시행규칙’이 6월 26일부터 시행됐다고 밝혔다.
- 지역건축안전센터는 전문성을 갖춘 건축사, 구조기술사 등을 채용하여 설계도서, 구조계산서, 사용승인 점검 등 건축물의 안전과 관련된 기술적인 사항을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한다.
-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.
 - ① 지역건축안전센터의 업무
 - 건축행정의 기술적인 사항에 대한 지원, 공사감리에 대한 관리·감독, 기존 건축물의 안전점검 및 기술 지원 등의 업무와 함께,

- 지역 내 건축물의 안전에 관한 사항으로 해당 지자체가 조례로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도 지자체 실정을 토대로 탄력적으로 정할 수 있게 했다.

② 지역건축안전센터의 운영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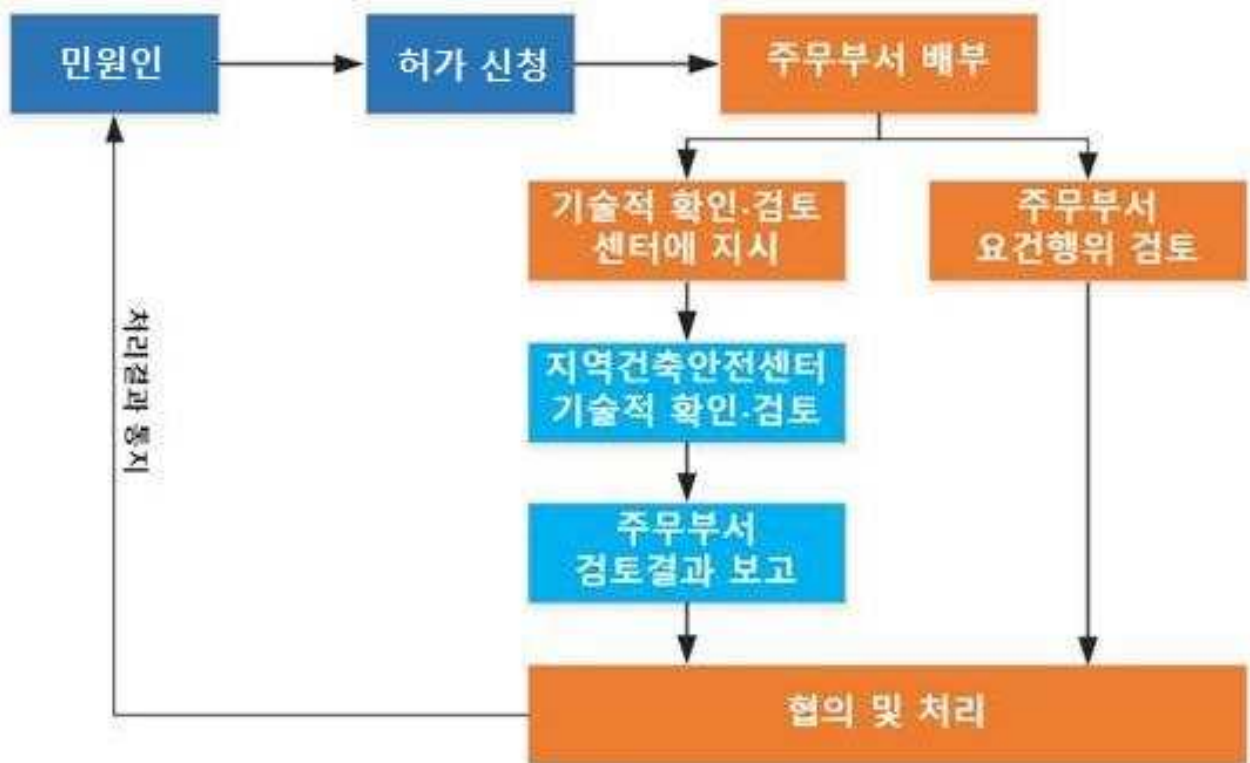
- 지역건축안전센터 소속 전문 인력은 건축사, 건축구조기술사, 건축시공기술사 등 자격을 갖춘 자로 하되,
- 건축사, 건축구조기술사는 각각 1명 이상 반드시 채용해야 하는 필수 전문 인력으로 지정하여 건축물 화재 및 내진기준 전문 검토가 필수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다.

③ 지역건축안전센터의 공동 설치

- 지역의 규모, 예산, 인력 및 건축 허가 등 신청 건수를 고려할 때, 지자체 여건상 지역건축안전센터의 단독 설치가 어려울 수 있어, 둘 이상의 지자체가 지역건축안전센터의 공동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고 이를 공동으로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.
- 국토교통부는 지자체별 지역건축안전센터가 빠른 시일 내에 설치돼 건축물의 설계·시공·감리 전반에 대한 전문적인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자체 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계획이다.



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 김부병 사무관(☎ 044-201-3765)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

행위주체: ■ 민원인 ■ 주무부서 ■ 지역건축안전센터